



이민/비자  
이동찬 변호사

### Q H-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

▶문= 현재 H-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.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?

▶답=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.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-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,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-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.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

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(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)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.

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(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)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설 때 이민 비자 또

는 I-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설 때 이민 비자 또는 I-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-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-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. 혹시 I-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-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-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-4

(H-1B의 배우자)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.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-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.

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-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. 연방 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방에서 항소를 했다.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-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.

▶문의: (213)291-9980



**크릴오일 증정 이벤트**  
Kwang Dong Original Woo Whang Chong Shim Won (Civet)

광동 우향청심원 10환 / 10병

무료 배송 Free Shipping

**덕화명란**

한달 입점기념 고급 에코백 증정

무료 배송 Free Shipping

JB튜브 2개+그대그대로 2개+백명란 2개+숙성고 2개

**이벤트** 2박스주문시 남극해 Krill Oil 2달분 무료증정

광동 우향청심원 10환/10병 현탁액

우향청심원 10환 \$89.99    우향청심원 10병 \$79.99

**명장의 레시피 덕화명란 실속형 패키지**

입점기념 고급 에코백 증정 \$103.92

**핫딜**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**213.368.2611**

가게/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,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, 온라인 Hotdeal.Koreadaily.com에서 구입해 주세요.

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!